

보호예수약관

제1조(신고사항의 변경) 이 증서 또는 인장을 분실하거나 주소변경, 개명, 인감변경 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저희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약정기한) 약정기한은 6개월로 하며 약정기한 후에도 계속 임차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증서의 개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수품의 임의처분) ① 계약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예수품을 찾아가지 않은 때에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예수품을 임의반출하여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의반출된 물품은 저희 상호저축은행 형편 등에 비추어 처분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예수품의 통상 시장거래 관행에 의거한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임차인과 사전에 정한 처분방법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단서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처분전에 임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해당 처분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이 도달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안내된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본조에 따른 처분으로 처분금이 있는 경우 반출 또는 처분에 소요된 관련 비용과 미납 보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거래처를 위해 공탁하기로 합니다.

제4조(수수료) ① 약정기한전에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서비스 제공기간(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저축은행이 이미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 <개정 2016.08.11.>

② 약정한 기한 경과 후에 해지할 때에도 그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6.08.11.>

제5조(이표배당권 청구) 예수품에 부속된 이표배당권은 그 지급기일 도래전에 수령증과 상환하여 이표와 배당권의 인도를 청구하여 주십시오.

제6조(반환청구) 예수품의 반환을 청구하실 때에는 이 증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시하여 주십시오.

제7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예수품의 멸실, 훼손 기타의 손해 또는 자연변질로 인한 내용의 이상에 대하여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매매·양도 질권설정 금지) 이 증서는 매매·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